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8,584,874	14,957,546
일반회계	461,577,995	13,847,340
특별회계	37,006,879	1,110,206
공기업특별회계	25,872,780	776,18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282,144	368,46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590,636	407,719
기타특별회계	11,134,099	334,023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957,057	58,712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2,881	86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988,120	59,644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3,984,400	119,53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201,641	96,049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68,25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